

문서번호	세무1과-3313
결재일자	2015.3.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99호

★ ◎

더불어사는 희망이찬 희망. 성동

주무관	세입총괄팀장	세무1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염은주	송경택	박재순	김종순	03/03 이비오
협조	기획예산과장	이윤영		
	법제팀장	이상수		

더불어사는 희망이찬 희망. 성동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2015. 1. 1. 일부개정에 따른 -

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일부 개정계획

2015. 2.



성 동 구

(세무 1과)

사 전 검 토 사 항

∴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	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고 려 사 항	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기 타	일 자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type="checkbox"/>
고 려 사 항	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
계 획	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type="checkbox"/>
● 홍 보 제 목 :	
● 중점 홍보사항	
-	
-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2015. 1. 1. 일부개정에 따른 -

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계획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2015. 1. 1.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」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구 재정 및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I 개정 근거

-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(법률 제12955호, 2015. 1. 1. 일부개정)
- 자치구 조례 담당자 회의 개최(2015. 1.26.(월))
(서울특별시 세제과-1087(2015. 1.22.))

II 개정 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‘15. 1. 1. 일부 개정내용 반영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」의 적용시한이 ‘14.12.31.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 연장 필요

III 주요 내용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‘15. 1. 1. 일부 개정내용 반영(안 제2조, 제6조관련)
 -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범위 축소(제38조제4항)

세 목	개정 전	개정 후
재 산 세	재산세의 100%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	‘15년~’16년: 재산세 75% 감면 ‘17년~’18년: 재산세 50% 감면

-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종료(제54조제2항)
- 상위법 개정(지방세특례제한법)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(안 제14조, 제16조관련)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 →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4조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6조 →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0조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」 적용시한 3년 연장
 - ※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3년 이내 연장 가능

IV 향후 추진일정

-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----- 2015년 3월 중
-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----- 2015년 3월 중
-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----- 2015년 3월 중
- 구의회 조례안 제출 ----- 2015년 4월 중
(제217회 임시회)
- 개정조례 공포 시행 ----- 2015년 5월 중

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1부. 끝.